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318 호 |
| 의결년월일 | 1995. 12. 28. (제 40 회) |

| | |
|------|----|
| 의결사항 | 원안 |
| | 가결 |



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자 | 고성군수 |
| 제출년월일 | 1995. 12. 18. |

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○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규칙이 공포('95. 11. 20)됨에 따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중 4호를 삭제코자 함.

○ 본 문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| 개 |
|--|---|
| 행 | 정 (안) |
| <p>제3조(결정사항)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및 시책 2. 정부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. 운영계획과 예산의결로 초래하는 사항 4. <u>중요한 조례, 규칙, 훈령의 제정, 개폐에 관한 사항</u> | <p>제3조(결정사항) - - - - -</p> <p>- - - - - .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4. <u>삭제</u></p> |